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11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라벨링)[식품 라벨링 영양표기 준수사항] 수정초안 예고

(預告 [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草案)

- 문서공고기관 : 행정원 위생복지부
- 문서공고일자 : 2017.11.08
- 문서번호: 衛授食字第1061302921 號
- 수정기관: 위생복지부
- 수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 문서주요내용:

포장식품 라벨링표기 준수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시행되었고, 현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본 수정 초안을 예고함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수정
2.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사항과 같음 (1)트랜스지방산(酸): 식품중 트랜스지방산이 비공액형 트랜스지방의 총합을 뜻함 (2)탄수화합물: 당류이며, 탄수화물의 총합을 뜻함 (3)당: 단당(單糖) 및 쌍당(雙糖)을 포함 (4)식이섬유: 인체의 소장으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은 3개 이상의 단당으로 조합된 탄수화물 및 목질소(木質素)를 가리킴 (5)제품선언(宣稱): 식품의 영양소 및 칼로리를 설명, 은유, 암시를 통한 표현을 가르킴	2.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사항과 같음 (1)트랜스지방산(酸): 식품중 트랜스지방산이 아닌 것의 총합을 뜻함 (2)탄수화합물: 당류이며, 탄수화물의 총합을 뜻함 (3)당: 단당(單糖) 및 쌍당(雙糖)을 포함 (4)식이섬유: 인체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은 3개 이상의 단당이 조합된 탄수화물 및 목질소(木質素)를 가리킴 (5) 제품선언(宣稱): 식품의 영양소 및 칼로리를 설명, 은유 또는 암시를 통한 표현을 가르킴	문자 수정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3. 포장식품의 라벨링 영양표기법은 용기 외포장 잘 보이는 곳에 표를 이용하여 하향식방법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표기해야 함: (1)[영양표기] 제목 기재 <u>(2)매 분량(份量)당 해당하는 ○g (또는 ○ml), 본 포장 상 ○ 개 분량 포함으로 표기</u> <u>(3)[매 분량], [매 100g/100ml] 또는 [매분량], [매일 참고 기준치의 백분율]로 표기</u> (4)칼로리 (5)단백질 함량 (6)지방산(酸), 포화지방산(酸), 트랜스지방산(酸) 함량 (7)탄수화물, 당 함량 (8)나트륨 함량 (9)[포장식품영양소선언준수 사항]중 선언한 영양소의 함량을 기재해야하며, 제2항 영양선언 정의의 영양소 함량에 부합해야 함 (10)업자가 자발적으로 표기한 기타영양소의 함량 자발적 표기 항목이 식이섬유일 경우 탄수화물 항목 다음 첫 행에 표기해 하며, 콜레스테롤, <u>단가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일</u> 경우 트랜스지방산 다음에 표기해야 함 <u>영양성분표는 수직방향으로 나타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했을 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잘라서 가로형 연속성 표로 나타내도 됨</u>	3. 포장식품의 라벨링 영양표기법은 용기 외포장 잘 보이는 곳에 표를 이용하여 하향식방법으로 아래의 내용을 표기해야 함: (1)[영양표기]제목 기재 (2)칼로리 (3)단백질 함량 (4)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 (5)탄수화물, 당 함량 (6)나트륨 함량 (7)제품선언에 표현된 기타영양성분 함량 (8)자발적으로 라벨링에 표기한 기타영양성분 함량 자발적 표기 영양성분은 식이섬유일 경우 탄수화물 항목 다음 첫 행에 표기해야하며, 콜레스테롤일 경우 트랜스지방 다음에 표기해야 함	1. 영양성분 표기양식 및 문자 수정 2. 자발적 지방산 표기사항 추가 3. 라벨링 양식을 자르고 영양표기 총 표의 표기 방법 추가수정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식품이 여러개 포장되었거나 여러 맛에 식품표기는 동일 영양표에 조합해서 표기 함 4. 포장식품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함량은 반드시 <u>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해야하며</u>, 제2항목 규정 외 반드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선택해서 표기해야함 (1)영양성분함량의 표기방법은 [매분량 및 100g 혹은 (100ml)로 표기를 해야하며 포장별 포함된 1회 분량을 표기해야 함 (2)[매 분량] 및 [1일 영양기준치 백분율] 내 제공된 영양소를 표기 해야하며, 이 상품의 매 포장별 포함된 분량 수도 표기해야 함 1일 영양소 권장 섭취 참고 기준치의 영양소를 지정할 경우 각 영양소의 매일 참고 기준치도 표기해야 함. 1일 영양소 권장 섭취 참고 기준치에 미지정된 영양소는 1일 영양기준치에 [*]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참고수치미지정] 으로 표기해야 함 1세 미만의 영아식품일 경우 전항 제(1)호의 양식으로 표기하며, 식품형태가 알약, 캡슐 형태(사탕류 식품 제외) 일 경우 제(2)호 기준하여 표기함	4. 포장식품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함량은 제2항목 규정이외에 반드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선택해서 표기해야함 (1)영양성분함량의 표기방법은 [매분량 및 100g 혹은 (100ml)로 표기를 해야하며 포장별 포함된 1회 분량을 표기해야 함 (2)[매 분량] 및 [1일 영양기준치 백분율] 내 제공된 영양소를 표기 해야하며, 이 상품의 매 포장별 포함된 분량 수도 표기해야 함 1일 영양소 권장 섭취 참고 기준치의 영양소를 지정할 경우 각 영양소의 매일 참고 기준치도 표기해야 함. 1일 영양소 권장 섭취 참고 기준치에 미지정된 영양소는 1일 영양기준치에 [*]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참고수치미지정] 으로 표기해야 함 1세 미만의 영아식품일 경우 전항 제(1)호의 양식으로 표기하며, 식품형태가 알약, 캡슐 형태(사탕류 식품 제외) 일 경우 제(2)호 기준하여 표기함	칼로리 및 영양성분함량의 표기수치 기재표현법
5. 포장식품 각 종류별 매회 분량의 중량(혹은 용량)표기는 [국민음식습관] 및 [유통포장식품형태-일반매회식용량]을 기준하여 고려해야함. 식품형태가 알약 또는 캡슐 형태일 경우 (사탕류 제외) 권장 섭취량 매회 분량은 정수(整數)로 표기해야 함	5. 포장식품 각 종류별 매회 분량의 중량(혹은 용량)표기는 [국민음식습관] 및 [유통포장식품형태-일반매회식용량]을 기준하여 고려해야함. 식품형태가 알약 또는 캡슐 형태일 경우 (사탕류 제외) 권장 섭취량 매회 분량은 정수(整數)로 표기해야 함	미수정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6. 포장식품영양표기단위, 반드시 아래의 규정으로 표기해야 함 (1)고체(반고체)일 경우 그램(公克) 또는 g로 표기하며, 액체일 경우 밀리리터(毫升) 또는 mL, ml로 표기해야 함 (2)칼로리는 칼로리(大卡), Kcal 또는 kcal로 표기해야 함 (3)단백질, 지방산(酸),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총합량으로 표기하며, 탄수화물, 당,식이섬유는 그램 또는 g으로 표기 함 (4)나트륨, 콜레스테롤, 아미노산은 밀리그램 또는 mg로 표기해야 함 (5)비타민, 무기질 등 단위표기는 부록1의 규정으로 의함 (6)기타영양성분의 단위표기는 통용되는 단위로 표기 함 물을 부어서 먹는 식품은 만약 그 영양성분이 물을 부운 상태에서 나타날 경우 물을 부은 후 단위 [매회 분량] 혹은 [100 밀리미터 분량]에 기준으로 영양성분 단위를 표기해야 함 반면 영양 선언 표기가 없을 경우 식품에 물을 붓기 전 혹은 후에 나타나는 영양소 기준으로해서 표기하며 물을 부어서 먹는 방법은 제품포장에 표기해야 함	6. 포장식품영양표기단위, 반드시 아래의 규정으로 표기해야 함 (1)고체(반고체)일 경우 그램 (公克) 표기하며, 액체일 경우 밀리리터(毫升)로 표기해야함 (2)칼로리는 칼로(大卡)리로 표기해야 함 (3)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당, 식이섬유는 그램 또는 g으로 표기 함 (4)나트륨, 콜레스테롤, 아미노산은 밀리그램으로 표기해야 함 (5)비타민, 무기질 등 단위표기는 부록1의 규정으로 의함 (6)기타영양성분의 단위표기는 통용되는 단위로 표기 함 물을 부어서 먹는 식품의 영양성분이 물을 부운 상태에서 나타날 경우 물을 부은 후에 기준으로 영양성분 단위를 표기해야 함 반면 영양 선언 표기가 없을 경우 식품에 물을 부은 전 혹은 후에 나타나는 영양소 기준으로해서 표기하며 물을 부어서 먹는 방법은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함	1. 영양기표법의 단위 추수정 2. 물을 부어서 먹는 식품의 표기법 설명 3. 물을 부어서 먹는 식품의 라벨링 표기자리 변경
7. 포장식품의 1일 칼로리 및 각 영양소 섭취 참고 수치는 부록1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7. 포장식품의 1일 칼로리 및 각 영양소 섭취 참고 수치는 부록2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참고해야한 부록 수정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8.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기의 칼로리, 단백질, 지방산(酸),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산(酸), 트랜스지방산(酸), 당 함량 등 부록2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0]으로 표기 함	8.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기의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 함량 등 부록3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0]으로 표기 함	문자수정 및 참고해야한 부록 수정
9. 포장식품에 표기된 성분수치의 수정 방법은 아래의 규정으로 수정해야 함 (1)1회 분량, <u>1회 수량, 1일 영양기준치</u> , 칼로리,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 <u>나트륨</u> , 식이섬유 및 <u>기타 자발적 표기항목의 수치는</u> 정수 숫자 또는 소수점 뒤 1자리로 표기함 <u>상기 표기항목의 제품성분 100g 혹은 100ml의 영양성분 함량이</u> [0]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매 열량 또는 영양소 함량 표기는 소수점 뒤 1자리로 표기하며, <u>소수점 뒤 1자리로 표기 후 여전히 수치를 잘 나타내지 못할 경우</u> 소수점 뒤 2자리로 표기 함 (2) <u>매회 분량의 중량(혹은 용량)은 수정 후 소수점 뒤 1자리로 기준하여 표기하며, 이에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 소수점 뒤 2자리로 표기 함</u> (3) <u>병제품 또는 중량을 고정할 수 없는 제품은 분량 수치를 정수 수치로 수정 후 수치 표기시 [약] 문자를 추가해야 함</u>	9. 포장식품의 표기된 수치의 수정방법은 아래의 규정으로 수정함: (1)포장식품에 포함되는 분량, 수량, 1일영양기준치, 나트륨, 표기수치는 정수 숫자로 표기함 (2)1회 분량, 칼로리,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 식이섬유 및 표기는 정수 숫자 또는 소수점 뒤1 자리로 표기함 제품분량이 많지 않아 이에 칼로리, 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당 함량 등 소수점 뒤 1자리 표기 후 여전히 [0]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치는 소수점 뒤 2자리로 표기 함 (3)같이 담어져 있는 제품 혹은 무게가 고정적이지 않은 제품은 개의 분량 수치를 정수 숫자로 수정 후 수치 표기시 [약...] 문자를 추가해야 함	1. 현조항의 제(1)항 및 (2)항 규정을 합병하며, 식품에 포함된 분량, 나트륨 함량, 1일영양기준치, 자발적 표기항목 수치 수정 2. 제8점의 표기항목의 수치가 [0]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의 수치 표기법 수정 3.제품 무게가 고정적이지 않을 경우의 수치 표기법 추가 4. 수치 표기법 사사오입 기준으로 한 수정
(4)비타민, 무기질의 표기는 소수점 뒤 3자리에 초과되지 않도록 표기함 (5)수치수정의 기준은 중화민국가표준 CNS2925의 [수치규정지시법] 혹은 사사오입으로 기준 함	(3)비타민, 무기질의 표기는 소수점 뒤 3자리에 초과되지 않도록 표기함 (4)수치수정의 기준은 중화민국가표준 CNS2925의 [수치규정지시법] 혹은 사사오입으로 기준 함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10. 포장식품의 영양수치는 검역 분석 및 계산하여 나온 값으로 표기하며, 이에 표기된 영양수치와 <u>실제검역수치ml</u> 오차범위는 부록3에 부합되어야 함	10. 포장식품의 영양수치는 검역 분석 및 계산하여 나온 값으로 표기하며, 이에 표기된 영양수치 오차범위는 부록4에 부합되어야 함	오차범위내용 추가 및 참고해야 하는 부록 수정
11. 포장식품의 칼로리 표기수치의 계산법은 아래의 규정으로 함: (1)단백질의 칼로리는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 함 (2)지방산(酸)의 칼로리는 1그램에 9칼로리로 계산 함 (3)탄수화물의 칼로리는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하며, 그러나 식이섬유일 경우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 함 (4)에리스리톨(Erythritol)의 칼로리는 1그램에 0칼로리이며, 기타 당류는 1그램에 2.4칼로리로 계산함 유기산의 칼로리는 1그램에 3칼로리이며, 알코올의 칼로리는 1그램에 7칼로리로 계산 함 당과 유기산 및 알코올에 함량 또한 <u>잘 보이는 곳에</u> 기재해야 함 <u>(5)상기 칼로리의 계산법의 1회 분량은 100그램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100그램의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함량을 1회 함량으로 환산한 후에 (1)과 같이 칼로리 계산을 함</u>	11. 포장식품의 칼로리 표기수치의 계산법은 아래의 규정으로 함: (1)단백질의 칼로리는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 함 (2)지방의 칼로리는 1그램에 9칼로리로 계산 함 (3)탄수화물의 칼로리는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하며, 그러나 식이섬유일 경우 1그램에 4칼로리로 계산 함 (4)에리스리톨(Erythritol)의 칼로리는 1그램에 0칼로리이며, 기타 당류는 1그램에 2.4칼로리로 계산함 유기산의 칼로리는 1그램에 3칼로리이며, 알코올의 칼로리는 1그램에 7칼로리로 계산 함 당과 유기산 및 알코올에 함량 또한 영양표 아래에 기재해야 함	1. 문자수정 2. 유기산 및 알코올 함량 표기 자리 수정 3. 1회 분량의 칼로리 계산법 추가
	12. 유통 포장식품 유아 및 아동 배합식품 및 특정질병배합식품 표기법은 [유통포장유아및아동배합식품 및 특정질병배합식품준수상]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영양표기 표와 표기수치의 오차범위 기준은[유통포장유아및아동배합식품 및 특정질병배합식품준수상]규정에 부합해야 함	현 조항을 삭제하였음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12. 포장식품 비타민 및 무기질류의 알약형태 또는 캡슐형태의 식품은 본규정에 따르지 않음	13. 포장식품 비타민 및 무기질류의 알약형태 또는 캡슐형태의 식품은 본규정에 따르지 않음	번호 변경
	14. 포장식품이 본 규정 실시 이전에 제조 되었을경우 (제조일로부터 기준함) 본 규정에 사용되지 않음	삭제

<시사점>

한국식품 수출 시 포장 라벨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동 수정안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통관 시 문제가 되니 수출 시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라벨링) [식품 라벨링 영양표기 면제대상 준수사항규정] 수정초안 예고

(預告 [得免營養標示之包裝食品規定] 草案)

- 문서공고기관 : 행정원위생복지부
- 문서공고일자 : 2017.11.08
- 문서번호: 衛授食字第1061302928 號
- 수정기관: 위생복지부
- 수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 문서주요내용:

주요 수정사항은 본 규정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함이고 국제화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본 수정초안을 공고함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규정의거로 정함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규정의거로 정함	미수정
2. 식품의 영양선언을 하지 않은 포장식품은 영양표기 면제 함: (1)음용수, 광천수, 열음 (2)기타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신선해물, 냉장 또는 냉동과일, 야채, 가축, 가금, 계란, 액란 및 수산물 (3)타서먹는 식품 그리고 기타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엽차, 커피, <u>마른콩, 보리, 기타 허브식물성 및 과일, 꽃 종자</u> (4)조미향신료 및 조리조림포장 (5)염 및 염 대체품 (6) <u>기타식품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함량이 [포장식품영양표기준수사항]의 [0]표기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u> 상기식품의 영양표기를 제공할 경우 본 규정 제22조에 따라야 함	2. 제품의 영양선언을 하지 않은 포장식품은 영양표기 면제 함: (1)음용수, 광천수, 열음 (2)기타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신선해물, 냉장 또는 냉동과일, 야채, 가축, 가금, 계란품, 액란 및 수산물 (3)타서먹는 식품 그리고 기타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엽차, 커피, <u>허브식물성 등</u> (4)직접적으로 먹지 못한 조미향신료 및 조리조림포장 (5)향을 내는 조미 향신료 (6)염 및 염 대체품 (7)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지 않은 식품원료일 경우 영양표기 면제 함	1. 제(1)항 제(2)항의 계란품을 계란, 액란으로 수정 2. 국제기준에 의해 영양성분이 소량 함량의 식품의 표기를 면함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이에 성분함량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른콩, 보리, 기타허브식물성 및 과일, 꽃 종자 및 제품의 영양선언을 하지 않은 영양성분 함량이 [포장식품영양표기준수사항]의 [0]표기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 표기 면제 함 3. 직접적으로 먹지 못한 문자 수정 및 제(4)항, (5)항 합병함 4. 원제(6)항 순차 변경 및 제(7)항을 제3점으로 옮김 5. 원제3점을 제2점으로 옮김
<u>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지 않은 식품원료일 경우 영양표기 면제 함</u>	3.상기식품의 영양표기를 제공할 경우 본 규정 제22조에 따라야 함	6. 국제기준에 의해 영양성분이 소량 함량의 식품의 표기를 면함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이에 성분함량 정보를 얻기가

수정조항	현조항	설명
		7.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표기 면함. 그러나 작발적으로 영양표기를 제공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에 의해 표기해야함, 그러지 못했을 경우 제28조 규정을 어김으로 위반 됨

<시사점>

한국식품 수출 시 포장 라벨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영양표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일 경우 상기 수정 초안을 참고 요망

1. (통관) (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3조 부록) 수정 발표
「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第四條、第五條、第八條及第三條附表」

- 문서공고기관 : 행정원위생복지부
- 문서공고일자 : 2017.8.04
- 문서번호: 衛授食字第1061302928 號
- 문서 주요내용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발표한 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法(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 수정 발표 및 수산물 수입기록 리스트 공고

○ 수정조항:

제4조: 체계성 검사는 수출국(지)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시 서면 심사 후 실지검사를 진행하며 평가점토를 통해 그 식품위생관리 체계성 및 정부기관 감독 조치가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 후 수출국의 수입 신청에 동의한다. 검사기관이 진행 전 서면 심사 시, 심사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국(지) 정부기관에 지정기한 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본 방법에 의거 실시하는 체계성 검사 대상 제품은 제 7조 경우 외 제1항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본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체계성 검사를 완료한 수출국(지) 또는 제7조에 의해 체계성 검사가 면제된 대상인 경우에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 또는 실지 검사를 요구하여 수출국(지)의 관리 체계성이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한다

- 수출국(지)식품위생안전관리 체계 및 정부기관 검역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 수출국 내에 중요한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이 발생 시
- 수출국(지) 대만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제품이 수입검사 시 엄중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8조 본 규정은 2017년 8월 4일 공고일 부터 실시.

제8조: 본 규정은 공고일로 부터 실시함.

본 규정은 2017년 8월04일에 공고됨으로 특별히 다른 실시일 공고 제외에 본 규정 공고일로 실시 함

○ 수산물 수입기록 리스트 공고

- 공고일 2017.11.03

- 주요내용: 내년 2018년 1월1일 부터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체계성검사를 실시를 통해 기존에 대만에 수입이 되지 않았던 수산물/수산가공품은 향후 수입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수입하고자하는 신규제품일 경우 수출국(지)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를 평가검토 후 수출국에게 수입허가를 발급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함 (세부규정 제4조항 참고).

이에 대만식약서에서 최근 몇 년간 수입된 수산물/수산가공품 HS CODE를 국가별로 정리하여 공고하였음

수입 승인된 한국산 수산물 수입코드 리스트										
국가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1604	1605
한국	03192 03199	030223 030229	030333 030269			030619 030622 030623 030624	030710 030721 030749 030791 030799		160414 160415 160416 160417 160419 160420 160430	160510
										160520
										160529
										160550
										160551
										160554
										160556
										160557
										160559
										160569
										160590

<2016년 12월 기준 수입된 수산물 수입코드 리스트>

* 본 공고는 (2016년 12월말까지 수입된 제품기준이므로, 만일 기존에 수입되어진 수산물/수산가공품 등 본 리스트에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만식약서에 고지하여 추가 됨. 2017년 연간에 수입된 수산물 / 수산 가공품 리스트는 2018년 1월말에 업데이트 될 예정

<2016년 말 기준> <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9778>

* 2017년 기준 수입 승인된 수산물 리스트 범위 외 수산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만 식약서는 서류 심사, 실지점검, 평가검사를 절차를 거치고 난 후 수입 허가

○ 시사점 :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 수정안은 기존 수입되었던 수산물 및 유제품에 한해 수입을 승인하고 그 외 신제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규정함. 對대만 수산물/수산가공품, 유제품 수출 시 대만이 허가한 HS code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규정된 HS CODE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대상 품목은 반드시 상기 설명된 대로 한국 정부 기관의 별도 신청, 대만정부의 허가 승인 후 수출이 가능함